

관세연구 16-01

#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2016. 1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강 성 훈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 다 량 관 세 사

노 영 예 전문연구원

양 지 영 연 구 원

# 목차

I. 서론	7
1. 연구 목적 및 배경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II.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	11
1.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11
가. 관세 감면의 개요	11
나. 관세 감면의 절차 및 내용	12
2. 우리나라 재수입 면세제도	17
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	17
나. 재수입절차	19
다. 재수입 면세제도 적용에 대한 사례	21
III.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28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개정 교토협약)	28
가. 개요	28
나.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	30
다. 국가별 수용 여부 비교	32

2. 미국	34
가. 미국 관세 감면제도	34
나. 미국 재수입 면세제도	36
다. 미국의 재수입 관련 기타규정	41
3. 중국	43
가.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	43
나. 중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44
다. 중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51
4. 일본	54
가. 일본의 관세 감면제도	54
나. 사전교시제도(관세 감면)	56
다. 일본의 재수입 면세제도	58
라.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62
마.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기타 규정	63
5. 호주	65
가.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65
나. 호주의 재수입 면세제도	67
다. 호주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69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71
1. 국제비교	71
가. 재수입 면세 근거 법령 등	71
나. 감면신청 절차	72
다. 재수입 제한기간	72

라. 물품의 동일성 규정.....	73
마. 기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 .....	74
바. 경주마 사례 비교 .....	75
2. 시사점.....	77

참고문헌.....	79
-----------	----

부록 I. Form 3311.....	83
부록 II. Form 4455.....	84
부록 III. 중국 반품 검사 신청서 양식.....	85
부록 IV.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1).....	86
부록 V.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2).....	87
부록 VI.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세금 감면 조회 용 C-1000호-22).....	88

## 표목차

〈표 II-1〉 감면조항 및 구분.....	13
〈표 II-2〉 대상과 요건.....	19
〈표 II-3〉 재수입 면세제도 관련 사례 요약.....	27
〈표 III-1〉 주요국의 교토협약 규정의 국내법 수용 내용 요약.....	34
〈표 III-2〉 Subpart A 규정 .....	36
〈표 III-3〉 미국 재수입 규정 .....	38
〈표 III-4〉 관세정률법에 따른 관세 감면제도 분류.....	55
〈표 III-5〉 잠정조치법에 따른 감면제도 분류.....	56
〈표 III-6〉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의 분류.....	59
〈표 III-7〉 재수입 면세 요건.....	60
〈표 III-8〉 재수입 감세 요건.....	63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76

## 그림목차

[그림 II-1] 관세의 감면요건.....	12
[그림 II-2] 재수입 면세절차.....	20
[그림 III-1] 외국 화주 증명서 .....	40
[그림 III-2] 최종 수취인 신고서 .....	41
[그림 III-3] 중국의 재수입 면세구조 요약.....	49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는 국산품 비과세와 이중과세 금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제도'를 운영 중임
- 재수입 면세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의 증가<sup>1)</sup>와 역직구 물품의 반품 증가로 인해 재수입 면세 적용에 대한 무역업체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되었던 물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sup>2)</sup>
  -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역직구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인업자들의 소액물품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면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sup>3)</sup>

---

1) 전체 산업 기준으로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0%(1,115억달러),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출은 전체 수입의 11.9%(424억달러)에 달함. 세부적으로 2007년 중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기업 내 수출(대모기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2.5%(제조업은 92.9%), 현지법인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기업 내 수입(대모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4.1%(제조업은 90.4%)임. 자료 : 하병기, 「한국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009.9, p.53

2) 다국적 기업내 무역의 발생 원인으로는 기업 내 사정에 의한 물품 인수 거절로 인한 반품, 국내 개발 장비의 시운전 후 재수입, 판매부진으로 인한 물품 재수입, 진출 국가에서 수입 통관 자체 거절로 인한 반품, 국내에 새로운 판매처를 발견하여 다시 재수입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3)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최고경영자 간담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688>(검색일자: 2017. 2. 13)

- 우리나라는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와 재수입 기한의 제한과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관세법」의 개정과 상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sup>4)</sup> 여전히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와 기간 제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 무역업체는 재수입 면세의 적용요건이 한정되어 있고 면세가능사례에 대한 상세 지침이 없어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sup>5)</sup>
    - 경매대회 및 경주마 관련 규정 부재로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 면세 적용 논란이 있었음
  -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수입 면세의 허가기간에 대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음<sup>6)</sup>
  
- 현재까지 관세 감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임가공물품과 재수입 면세제도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재수입 면세의 국제비교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었음
  - 외국의 관세 감면제도와 관련한 연구 또한 이루어진 바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각국의 재수입 면세제도의 내용을 파악, 재수입 면세 적용 범위와 재수입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향후 법 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음

4) 「재수입 면세대상 범위 무역업체 관심 고조」, [http://anseong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2961&subMenuId=&communityKey=B0123&boardId=553&act=VIEW](http://anseong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2961&subMenuId=&communityKey=B0123&boardId=553&act=VIEW)(검색일자: 2016. 2.28)

5) 한국무역협회, 「수출 후 재수입물품 면세적용 관련 '사용'의 범위 명확화 건의」, [http://www.kita.net/trade\\_sos/com/download\\_m.jsp?f\\_path=/SERV/BEA92/app\\_root/defaultApp/WEB-INF/soupload&orig\\_name=%C0%E7%BC%F6%C0%D4%B8%E9%BC%BC+%B0%B3%BC%B1+%B0%C7%C0%C7.pdf&file\\_name=20141118\\_1416271687673.pdf](http://www.kita.net/trade_sos/com/download_m.jsp?f_path=/SERV/BEA92/app_root/defaultApp/WEB-INF/soupload&orig_name=%C0%E7%BC%F6%C0%D4%B8%E9%BC%BC+%B0%B3%BC%B1+%B0%C7%C0%C7.pdf&file_name=20141118_1416271687673.pdf)(검색일자: 2017. 2. 21)

6) 「수출품 회수 때 관세 내라니'...억울함 쏟아 낸 증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811199>(검색일자: 2017. 2.20)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의 규정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 감면제도, 재수입 면세제도, 재수입 물품 통관사례, 그리고 재수입 면세제도와 관련된 개정 교토협약의 내용을 조사함
  - 개정 교토협약상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의 각국 국내법상 수용 여부를 조사·비교함
    - 개정 교토협약을 수용하였으나 국내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및 수용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별도로 조사함
    - 각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는 물품의 동일성 인정 범위와 관련한 사례 위주로 조사함
    -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물품의 사례는 자료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었음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무역량이 많은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정함
  - 단,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의 경우와 상이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대륙법계 국가인 중국과 일본 또한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체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조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수입 면세 근거법령, 감면 사전심사의 유무, 감면신청 시기, 물품 동일성(사용의 범위), 재수입 면세 제한기간을 선정하여 차이를 비교함
  - 재수입 면세 근거법령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관세법」상에서 규정하는지 또는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함
  - 감면 신청시기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조사함
  - 물품의 동일성 부분은 각국의 보수·유지 허용 범위와 사용의 허가 범위를 조사함

- 재수입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재수입 및 재수입 용기와 연구 시험목적의 재수입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함<sup>7)</sup>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이규정이나 보완규정이 있는 경우 기타 규정에서 별도로 비교함
- 본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한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재수입 면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개정 교토협약상의 재수입 면세제도와 주요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및 재수입 면세규정에 대해 조사함
    - 각국의 관세 감면제도의 체계 및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 대상, 적용 요건, 사전 심사, 감면 절차, 관련 규정,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규정을 근거법령, 신청절차, 제한기간, 물품 동일성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고서의 비교결과를 요약함

---

7) 재수입 용기 및 연구시험목적의 재수입 제한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 한함

## II.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

### 1.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 가. 관세 감면의 개요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함
- 그러나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세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며 이를 감면이라고 함
  - 관세 감면제도는 「관세법」상 관세율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관세 감면의 신청 및 승인의 절차에 따라 혜택이 부여됨
- 관세는 「관세법」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서도 감면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관세 감면은 「관세법」에 의해 행해지며 본 보고서는 「관세법」상 감면제도에 중점을 두었음
  - 관세법상 관세 감면은 「관세법」 제88조에서 제105조까지 관세법 조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의 감면은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물품 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물품 등이 그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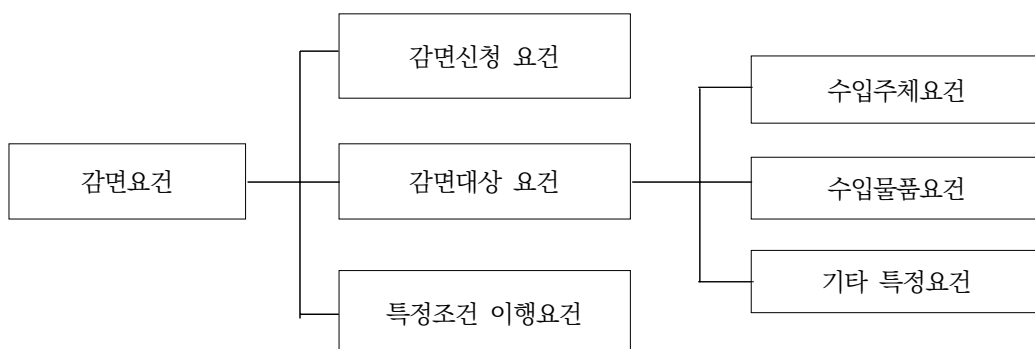
-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 감면은 주로 국제기구에서 다자간에 체결한 협정을 비롯하여 특정 국가와 체결한 쌍무협정 등이 있음
- 관세 감면은 산업지원, 국제관례 존중, 사회·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정책 수행 또는 기본관세율의 불균형 보완 등 각종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감세하는 형태로, 국제관례 존중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면세 형태로 적용됨

## 나. 관세 감면의 절차 및 내용

### 1) 관세 감면의 요건

- 관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 의무의 경감과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의 감면요건은 크게 감면대상요건, 감면신청요건, 특정조건 이행요건으로 분류됨

[그림 II-1] 관세의 감면요건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1

- 감면신청 요건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요건이며 특정조건 이행요건은 세관장이 감면 처분 시 ‘특정 용도에 사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 경우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임
- 특정조건 이행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시 감면한 세액을 다시 징수하는 처분이 이루어짐

〈표 II-1〉 감면조항 및 구분

법조항	조항명	목적	감면 구분	관세 경감률 (%)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외교관계, 국제관례 존중,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무조건	100
제89조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면세	세율불균형 시정 등	조건	100
제90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학술연구진흥, 교육발전지원 등	조건	50-80
제91조	종교용품 등에 대한 면세	사회복지 향상 등	조건	100
제9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면세	국제관례 존중 등	무조건	100
제93조	특정물품에 대한 면세	사회정책 수행 등	조건	100
제94조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	관세징수비용 절감, 납세자 편의도모 등	무조건	100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면세	환경오염방지,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지원 등	조건	30
제96조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 등에 대한 면세	영리가 목적이 아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무조건	100
제97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면세	인적·물적교류 촉진 등	조건	100
제98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감면세	인적·물적교류 촉진 등	조건	30-85
제99조	재수입면세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지원 등	무조건	100
제100조	손상감세	과세 형평 등	무조건	손상된 부분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	가공무역 증진	무조건	수출된 부분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 송기찬·임예진, 『관세법』, 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감면대상 요건은 수입주체요건, 수입물품요건, 기타 특정요건으로 나누어짐
  - 수입주체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자가(예: 외교관 등) 수입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수입물품요건은 물품의 용도(예: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의 경우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 지정), 수입형태(휴대품, 별송품), 수입이유(예: 우리나라로 거주 이전을 위해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시물품) 등을 의미함
  - 기타 특정요건은 수입물품 및 수입주체 요건 외에 일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함(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경우)

## 2) 관세 감면의 신청 및 감면요건 심사

-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정근거, 기타 참고 사항 등임
- 단, 예외 사유가 있을 시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사유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감면 신청이 가능함
  -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수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과지 규정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청가능 함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전 신고된 세액의 정확성, 감면요건 구비 여부, 기타 수입통관

관련 사항을 심사함

-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구비 및 신고서의 일치 여부,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신청의 적정 여부,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용도 신고 여부 및 수입요건 구비 여부, 재수입의 경우 수출증빙자료 등을 심사함

### 3) 감면세액 산정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및 재수출 감면의 경우,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경감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본 보고서에서 다룬 재수입 면세의 경우 100% 전액 면세로 별도의 경감률 산정 대상이 아님

### 4) 감면물품의 사후 관리

- 「관세법」에서 사후 관리물품으로 규정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음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및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물품은 용도의 사용 및 양도가 가능함

-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했을 시 용도의 사용자 및 양도인으로부터 납부한 관세를 즉시 징수함
- 단,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거나 감면 용도 외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도 관세 감면이 가능함(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
- 단, 용도 외 사용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게 양도 시 「관세법」 외 법령·조약·협정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 관세 감면이 불가함
-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수입 면세는 사후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재수입 면세는 재수입 물품을 수입 후 양수하거나 감면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하더라도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세의 일종임

#### 5) 관세 감면물품 사전심사(2014년 폐지)

-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신고 전 감면 심사제도를 두었으나 2014년 10월 30일부로 「관세 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sup>8)</sup>
  - 동 제도는 2001년 도입되었으며 15일 이내의 심사기간, 심사 결과는 적정, 부적정, 부분적정 또는 사전심사 처리 불가로 분류되었음
  - 법령 해석 등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장에게 감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하기 어려워 관세청장 심사로 운영하고 있었음
- 본 고시는 고시 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함

8) 관세청 고시 제2014-100호, 2014-10-28, 폐지 제정

## 2. 우리나라 재수입 면세제도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재수입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세해줌
  - 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국내의 경쟁상품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함<sup>9)</sup>
  
- 재수입물품이란 내국물품이 수출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나가 외국물품이 된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내국물품이 되는 것으로 세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 시 관세가 면세가 됨<sup>10)</sup>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도 국내 수입→ 외국 수출→ 국내 재수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가 됨<sup>11)</sup>
  -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수출하였던 성질 그대로 동일한 물품이 재수입되어야 함
  -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외국물품으로 인정하여 재수입 시 면세에서 제외가 됨

### 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sup>12)</sup>

- 재수입 면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면세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해야 함

9) 텍스넷, <http://www.taxnet.co.kr>(검색일자: 2017. 1. 31)

10)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11) 텍스넷, <http://www.taxnet.co.kr>(검색일자: 2017. 1. 26)

12) 「관세법」 제99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20170101,14379,20161220)/제99조 (검색일자: 2017. 1. 15)

- 수출에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하고 있음
  - 사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있음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관세가 면제됨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2014년 1월 1일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를 위해 새 조항이 신설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로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에서 재수입 면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13)</sup>
- 법 제99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함

13)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170215,00589,20170215\)/제54조\(검색일자: 2017. 1. 18\)](http://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170215,00589,20170215)/제54조(검색일자: 2017. 1. 18))

- 법 제9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 II-2〉 대상과 요건

면세대상	재수입시한	사용된 경우 면세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품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행사에 물품이 출품됨
해외 시험 및 연구를 위해 수출 후 다시 수입된 물품	-	-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1, p.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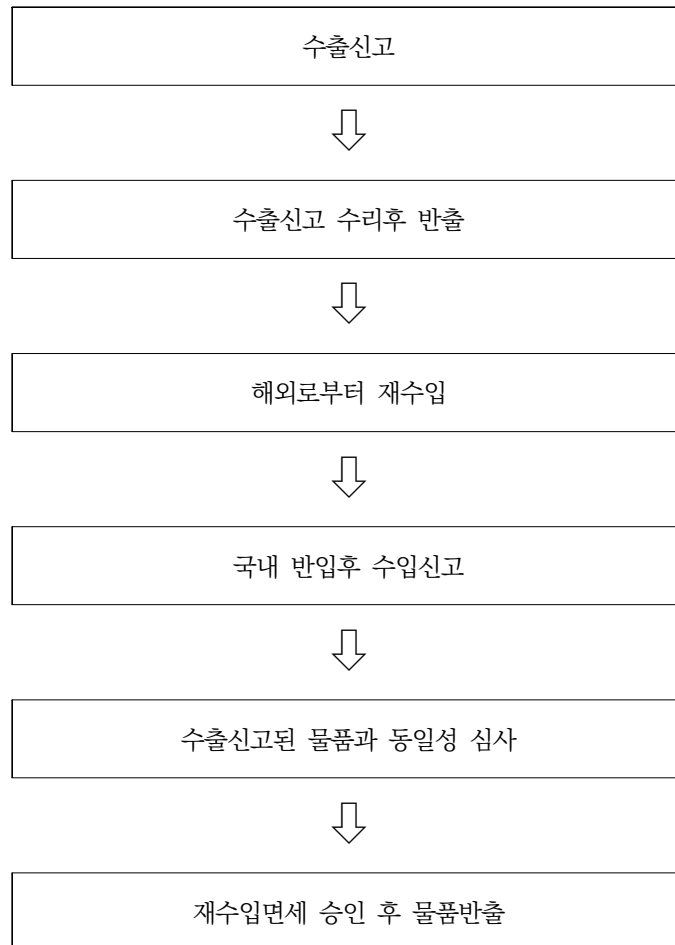
#### 나. 재수입절차<sup>14)</sup>

-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신고 후 세관에 의해 수리가 됨
  - 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고 물품 심사를 받음
  - 추후 수출한 물건과 재수입한 물품의 동일성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신고 시 물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함
    - 물품의 일련번호, 규격 등의 상세정보를 넣어서 추후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함
  - 심사가 끝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물품을 선적함

14)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 수출용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용 등의 이유로 다시 재수입됨

[그림 11-2] 재수입 면세절차



출처: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p.16

-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 후 수입신고를 함
  -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잔량관리표(필수는 아님), 수입신고서, 감면신청서 등이 있음
  
- 재수입 시 동일성 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입신고자는 물품의 동일성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의 물품의 단가, 규격, 수량, 모델명 등이 일치되어야 함
  - 재수입된 물품의 수량이 수출된 물품을 초과하면 재수입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세관에서 통과되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고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물품이 반출이 됨

#### 다. 재수입 면세제도 적용에 대한 사례

##### 1) 경주마의 재수입 면세와 관련한 사례

- 2016년 3월, 우리나라 세관은 국제경주대회 출전 후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해 재수입 면세 적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관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함<sup>15)</sup>
  - 안양·인천·전주 등 일선 세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세 면세로 통과한 승마·경마용 말 20여마리에 대해 총 7억 4천만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 통보함
  
- 세관의 관세 추징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관련 업체는 재수입 면세 규정상 경주마의 관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함
  - 국제경주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 1호에서 규정한 ‘전시회, 박람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쟁점물품인 경주마는 재수입 감면이 적용되어야

15) 『스포츠경향』, 「경주마는 국제대회 때마다 관세 내라 세관방침에 업계 황당하다 반응」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08211711003&sec\\_id=561501&pt=nv](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08211711003&sec_id=561501&pt=nv), (검색일자: 2017. 2. 21)

한다고 주장함

- 국산품 비과세와 이중과세 면제를 위해 운영되는 재수입 면세제도 취지상 경주마의 재수입 면세 적용 불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그러나 관세청은 경주마에 대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기각함<sup>16)</sup>
- 관세청은 국제경마대회가 본질적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그 물품의 특성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주마가 「관세법」 제99조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함<sup>17)</sup>

## 2) 재수입물품의 ‘사용의 범위’ 관련 사례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 범위는 수출물품이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되는 경우이거나, 해외에서 물품의 사용이 없는 단순한 검사를 거치고 재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함
- 따라서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의 변함이 없는 단순한 검사는 재수입 면세대상이나 변함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를 적용받거나 가공·수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변형이면 감세에서 배제됨
- (단순검사) 국내 제작물품인 모터가 독일제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모터 1개를 시험용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또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18)</sup>

16) 관세청 2016.10.21. 자 적부심 제2016-74호, 85호, 89호 의결

17) 관세청은 경주마에 대해 ‘기수와 함께 이동되고 기수의 직업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96조와 제9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와 재수출 면세규정의 ‘기수의 직업용구’로 볼 수 있으며 해당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함

- 시험의 범위가 가공·수리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단순한 검사 후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성능검사)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해 링 기어를 수출하여 열처리 후 재수입한 경우에는 ‘열처리’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규정상 가공·수리 범위에 해당되어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없음<sup>19)</sup>
  - ‘열처리’되어 재수입된 링 기어는 수출 당시의 성질이나 형상과 동일할 수 없으며, 이는 동일 상태 재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sup>20)</sup>
- 재수입 면세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재수입 면세가 적용 가능한 물품의 사용 범위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서 규정하는 가공·수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검사와 같은 범위의 ‘사용’이어야 함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규정상의 가공·수리 범위는 HS Code가 변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수리에 한정됨
  - (봉제가공) 의류 임가공자로서 국내에서 일체의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현지에서 봉제가공만을 거쳐 의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부자재 수출 시 완성품인 의류 HS Code로 수출신고될 수 있다면 의류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적용이 가능함<sup>21)</sup>
- 단, HS Code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감세 적용이 됨<sup>22)</sup>

18) 관세청 2000.1.11. 관세평가분류원 47221-9

19) 관세청 2012.2.7. 통관기획과-595

20) 유권해석에서는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열처리된 링 기어의 사례는 감면의 신청서거나 감면서류의 종류 등 감면요건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1) 관세청 2003.11.10. 관세협력과-104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

### 3) 재수입물품 면세 적용 범위의 조정

- 재수입 면세제도의 범위는 201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보세 가공수출을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
  - 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원상태 물품만이 재수입 면세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짐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경우, 동일 물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는 것임<sup>23)</sup>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입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재수입 면세제도의 취지임을 강조함
  - 또한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된다면 면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임
- 개정된 재수입 면세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용의 범위는 결국 재수입물품이 해외에 있는 동안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임

### 4) 부분품·장착물품의 재수입 인정사례

-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때 수출된 물품 전체가 그대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수입되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가 가능함

23) 관세청 보도자료,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http://english0.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GBL4ZJ7Lv0Vyy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siteId=main&searchCtgr=&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95&recordCountPerPage=10](http://english0.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GBL4ZJ7Lv0Vyy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siteId=main&searchCtgr=&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95&recordCountPerPage=10)(검색일자: 2017.1.25.)

- (부분품 재수입)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품을 대체 수출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함<sup>24)</sup>
- 또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입물품에 장착되어 부분품처럼 재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가 가능함
- (장착된 물품 재수입) 타이어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독일 벤츠사의 덤프트럭에 장착한 뒤 수입한 경우, 비록 수출물품(타이어)과 수입물품(덤프트럭)이 다르지만 타이어의 수출 및 수입 당시 성질과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과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다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함<sup>25)</sup>
- 관세청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출물품의 부분품이나 수출되었다가 수입물품에 별도 장착되어 독립적 기능을 하는 물품이 일부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에 변함이 없다면 재수입 면세가 적용됨

#### 5) 수출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로 인해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더라도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 최초 수출은 중개인이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하자물품의 반송 수령은 수출 계약자의 책임인 경우
- 수출물품의 상대국 통관 거절이나 인수거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가 국내에서 신규 거래처를 발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 최초 물품을 수입한 해외중개인(A)이 다른 거래처(B)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24) 기획재정부 1991.4.20. 재무부관세 22700-149 및 관세청 2001.4.6. 통관기획 47240-426

25)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6328 판결.

- 「관세법」은 물품의 최초 수출자와 재수입 면세 적용 당시의 재수입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제3의 재수입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면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재수입 시 해당 수출신고필증이 수출 환급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물품의 동일성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수출 시 발생하는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2014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물품 재수입 시 면세는 불가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수입 시 면세가 제외됨<sup>26)</sup>
  
- 이에 따라 수출입자가 다른 물품의 재수입 시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환급에 대한 문제(감면 절차상 문제)와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통관서류로 증명하여야 함
  - 수출자(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수입자가 환급권리포기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재수입 면세가 적용이 됨

---

26) 창원세관, '2014년 개정 「관세법」 등 설명회', 2014.2.12

〈표 II-3〉 재수입 면세제도 관련 사례 요약

구분	내용
<p>물품 사용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의 변함이 없는 단순한 검사 정도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li> <li>○ 물품 검사의 기준은 해외입가공물품 등의 감세에서 규정하는 가공·수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도의 물품의 사용이어야 함</li> </ul>
<p>면세적용 범위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수입물품이 해외에 있는 동안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야 함</li> </ul>
<p>수출물품 부분품 면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의 부분품 또는 장착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 및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에 변함이 없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함</li> </ul>
<p>수출입자의 동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자가 환급권리 포기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함</li> </ul>

출처: 저자 작성

### Ⅲ.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 본 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주요국으로 하여 관세 감면제도와 재수입 면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실적이 높은 국가와 높은 수출입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정하였음<sup>27)</sup>
-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에 앞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인 주요국 또한 모두 가입하였고 협약 내용 중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함

####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개정 교토협약)

##### 가. 개요

- 세관(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sup>28)</sup> 일명 ‘개정 교토협약’이 2006년 2월 발효됨<sup>29)</sup>

---

27) ① 2015년 주요국 현지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미국(1위), 중국(2위), 일본(5위), 그리고 호주(10위)임 ② 2016년 12월 주요국 수출금액 기준으로 중국(1위), 미국(2위), 일본(5위), 그리고 호주(12위)이며 우리나라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국(1위), 일본(2위), 미국(3위), 그리고 호주(7위)임 출처: ① 한국수출입은행,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자: 2017.2.14.), ②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검색일자: 2017.2.14.)

2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기존 교토협약은 부속서 조항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체약국들로 하여금 자국에 유리한 상이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가입국들이 필수적으로 수락해야 할 내용을 일반부속서에 편입시키고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속서로 편입시켜 강제 이행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협약의 구속성을 강화하였음
-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 등 세관절차의 복잡성과 부조화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나타남<sup>29)</sup>
- 개정 교토협약은 각국의 통관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관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제관세법규로서 통관절차의 국제적인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됨
- 개정 교토협약의 구성은 ① 개정의정서 ② 협약본문 ③ 일반부속서 및 ④ 10개의 특별부속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sup>31)</sup>
-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에 관해 규정함
  - 협약본문(Body of The Convention)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정의, 범위와 부속서의 구조, 협약의 가입·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협약의 관리, 협약의 가입·탈퇴, 규정의 수락·유보, 분쟁해결, 협약의 개정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됨
  - 일반부속서(General Annexes)는 모든 가입국이 수용해야 할 관세행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핵심규정을 수록하고 있음

29)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사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8, p.7

30)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 무역』 2006년 1월호, 2006.1, p.2

31) 정재호의 2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8, pp.10~11

- 일반원칙, 정의,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 및 제세, 담보, 세관통제, 정보기술의 적용, 세관과 제3자와의 관계, 세관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불복신청 등의 10개의 장으로 구성됨
  -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과도기 표준(Transitional Standard)으로 구분되며, 표준은 협약발효 후 3년 이내에, 과도기 표준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특별부속서(Specific Annexes)는 가입국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수락사항으로 특별한 세관절차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함
    - 10개의 각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 장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장(chapter)이 있고, 장별로 선택적 수락이 가능함
    - 특별부속서의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으로 구성되며 권고관행은 이유를 적시하여 유보할 수 있음
  - 이행지침(Guideline)은 협약의 구성부분이 아니지만, 협약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대표적 적용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2016년 10월 27일 기준,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05개 국가임<sup>32)</sup>
-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9일에 가입하였음
  - 중국이 2000년 6월 15일에 가입하여 비교대상인 주요 교역국 중 가입시기가 가장 빠르며 호주는 200년 10월 10일, 일본은 2001년 6월 26일, 그리고 미국은 2005년 12월 6일에 각각 가입하였음

## 나.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

- 개정 교토협약에서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10개의 특별부속서 중, 특별부속서

32) WCO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Instruments](http://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Instruments)(검색일자: 2017.1.13.)

B장 ‘수입(Importation)’의 내용이며 이는 ① 내수용 통관 ② 동일상태 재수입 그리고 ③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재수입 면세제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므로 제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개정 교토협약에서 재수입 면세는 ‘동일상태 재수입’으로서 수출된 물품이 제조 등 되지 않고 수입관세 없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세관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일상태 재수입’이란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관세 및 제세 없이 내수용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 또한 재수입 물품은 최초 수출함으로써 주어진 관세 및 제세의 환급, 경감 또는 조건부로 감면된 세액 또는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다면 재수입 시 납부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함

□ ‘동일상태 재수입’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는 별도 없으나 재수입 당시 물품 상태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음

- 수출물품의 일부만이 재수입 되는 경우에도 동일상태 재수입이 허용되어야 함<sup>33)</sup>
-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수출한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상태 재수입은 허용되어야 함<sup>34)</sup>
-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사용 또는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동일상태 재수입을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함<sup>35)</sup>
-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그 보존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이유로 동일상태 재수입이 거부되지 아니하여야 함<sup>36)</sup>

33)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2조

34)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3조

35)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4조

36)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5조

- 단, 그러한 작업에 의하여 수출 당시의 물품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함

- '동일상태 재수입'이 적용되는 경우 재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함
  - 동일상태 재수입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된 물품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미 다른 세관 절차하에 놓인 물품에 대하여도 허용되어야 함<sup>37)</sup>
  - 동일상태 재수입은 재수입 예정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출되었음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하여야 함<sup>38)</sup>
  - 동일상태 재수입이 허용되는 기한은 각 동일상태 재수입 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함<sup>39)</sup>
  - 동일물품이 수회에 걸쳐 재수입 조건부로 수출되고 동일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수출 시 제출된 재수입 조건부 수출신고가 그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물품의 재수입 및 수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sup>40)</sup>

#### 다. 국가별 수용 여부 비교

-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은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미국 및 호주는 수용함
- 우리나라는 개정 교토협약에서 규정한 물품의 재수입 적용범위가 「관세법」과 상충하고 포괄 세관신고의 허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유보함
  - 손상 또는 품질저하를 이유로 동일상태 재수입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37)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6조

38)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7조

39)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8조

40)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15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 면세 적용범위와 모순됨

- 다만 재수입물품 통관 진행 시 세관의 판단에 따라 ① 수출물품의 일부만이 재수입되거나 ② 재수입물품의 수출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재수입 면세가 승인이 되며 마지막으로 ③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행해진 작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면세 적용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음<sup>41)</sup>
  
-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수용하지 않았음
  - 중국은 국내 관세 관련법상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재수입 물품의 원상태 판단 여부는 통관시점 세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어 재수입 면세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둠
    - 중국은 계약체결 전 물품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물품 등 특수성이 있는 물품은 비록 테스트로 인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물품의 원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일본은 국내 관세 관련 법령에서 물품의 부분 재수입과 물품의 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작업 수행 등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 내용의 일부를 허가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 중 포괄세관신고의 허용(제2장 제15조)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함
  - 단, 호주의 경우 사용 또는 손상되거나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재수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일부 내용은 국내법상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수용을 하였지만 국내법상 모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음<sup>42)</sup>
    - 동일상태 물품은 제조상의 어떠한 과정이나 가치나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경우에

41) 수출입자의 동일성 여부는 2010년 재수입 면세조항을 개정하면서 수출자의 환급청구권이 우선시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비록 수출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재수입 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함

42) 19 CFR Part 10.8a에 수출자, 수입자 동일성에 관련 규정이 있음

만 재수입 면세가 허용되며, 물품별로 제한기간이 차이를 보이며, 재수입 시 제 3자에 의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표 III-1〉 주요국의 교토협약 규정의 국내법 수용 내용 요약

구분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교토협약 <특별부속서B 제2장> 수용 여부	×	○	×	×	○	
국내법상 규정 여부	일부 재수입 인정	×	×	×	○	×
	수출입자 동일성 여부	○	○	×	×	×
	손상·저하 물품 인정	×	×	×	×	×
	보존·유지 작업 인정	×	×	×	○	○

출처: 저자 작성

## 2. 미국

### 가. 미국의 관세 감면제도

- 미국은 수입하는 품목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 관세 감면규정으로 관세법 「U.S.Code Title 19」의 하위 규정으로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하 CFR) Title 19」에 규정되어 있음
  - chapter 1의 19 CFR Part 10~10.183과 19 CFR Part 158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면제도의 종류, 절차, 제출해야 할 서류, 신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임

- CFR 이외에도 HS code인 미국 품목 분류표 「19 U.S.C 12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이하 HTSUS)」에 감면 관련 내용이 있음
  - 미국 품목분류는 9801.00.25 같이 8자리이며 통계목적으로 10(9801.00.25.00)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음
    - HTSUS 9801.00.25 경우 수출자 동일성, 수출 후 물품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미국 품목 분류표는 총 제99개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감면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제98류, 제99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모든 물품이 제97개류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감면을 위해 특별히 제98, 제99류를 사용하는 특이점이 있음
  - 제98, 제99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류임
  
- 감면제도로는 일시 담보 수입면세(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 특별감면대상(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이하 제98류), 일시세율변경(제99류),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MTB), 일시 수입통관증서(ATA carnet)가 있음
  - 일시 담보 수입면세(TIB)는 재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를 제출하고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감면대상 HTSUS 제98류는 특별분류규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수입 면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일시세율변경 HTSUS 제99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규정들로 법안에 의해 관세율의 조정, 관세율을 임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 관련한 내용임
  -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법안(MTB)은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여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일시 수입통관증서(ATA carnet)는 임시적으로 면세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될 장비, 샘플, 상업견본 등에 사용하고 있음

## 나. 미국 재수입 면세제도

### 1)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으로는 U.S.Code 하위 규정인 「19 CFR Customs Duties」에 관세와 통관에 관한 사항이 있음
  - 「19 CFR Chapter I」의 Part 10의 Subpart A와 Part 141 Subpart A에 재수입 관련 규정이 있음
- 19 CFR Chapter I Part 10는 일부 면세인 품목과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Subpart A는 10.1 - 10.10 조항은 수출되었다가 돌아오는 물건들에 대한 규정임<sup>43)</sup>

〈표 Ⅲ-2〉 Subpart A 규정

구분	내용
19 CFR Part 10.1	국내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절차
19 CFR Part 10.3	환급; 내국세
19 CFR Part 10.7	컨테이너와 케이스
19 CFR Part 10.8	개조와 수리를 위해 수출된 물품
19 CFR Part 10.8a	개조와 수리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품
19 CFR Part 10.9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물품

출처: 19 CFR Chapter I Part 10 Subpart A 내용 요약(검색일자: 2017. 2. 1)

43)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0/subpart-A>

- 「19 CFR Part 141」 물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이며 Subpart A에는 관세에 관한 의무와 물품의 수입을 위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sup>44)</sup>
  - 「19 CFR Part 141.1」 수입 관세에 대한 의무
  - 「19 CFR Part 141.2」 재수입 관세에 대한 의무
  - 「19 CFR Part 141.4」 수입신고 필요
  
- 재수입과 관련된 규정은 19 CFR Part 10의 Subpart A와 19 CFR Part 141 Subpart A에 규정됨<sup>45)</sup>
  - 재수입된 물품 등 재수입요건, 품목분류, 신청서류에 대한 규정 등이 있음
  
- 물품이 재수입되었을 때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46)</sup>
  - 미국에 살던 개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가지고 오는 개인적 물품
  - 외국 제조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
  - 메탈박스, 통(casks), 배럴(barrels), 액체 위험물질을 담는 대형 유리병(carboys), 병(bottles), 메탈드럼, 대형 컨테이너가 비어 있는 상태로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물품의 용기나 커버로 되돌아 올 경우
    - 미국산 제품을 신고 수출되었다가 빈 채로 돌아오는 경우
  - 전시회를 위해 수출하는 경우
  - 국내 동물을 일시적 방목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8개월 안에 돌아오는 경우
  -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기타의 재수입물품
  
- 미국의 재수입 감면의 특이사항으로 특별분류규정(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제98류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 및 재수입 면세품목들이 규정되어 있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적 면제사항, 미합중국 직원 및 피난민에 대한 개인적

44)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41/subpart-A>

45)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0/subpart-A>

4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41.2>

면제사항, 미합중국 정부의 수입 면제사항 등임

- 재수입 면세 관련 품목분류는 제9801, 제9803호에 해당되며 수출용기, 전시회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 후 재수입, 과학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험 등이 관련 품목임
  - 제9803호(HTSUS 9803.00.50) 수출입 시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케이스임

-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관련 CFR 법령뿐만 아니라 HTSUS 품목규정들을 함께 참고하여야 함

〈표 Ⅲ-3〉 미국 재수입 규정

법령	내용	품목분류
19 CFR Part10.1	국내물품의 수입신고 요건	9801.00.10
19 CFR Part10.66	전시회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	9801.00.50 9801.00.60
19 CFR Part10.67	과학·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험	9801.00.40
19 CFR Part10.7	컨테이너와 케이스	9803.00.50
19 CFR Part10.74	외국에 일시 방목을 위해 나갔다가 새끼와 함께 돌아오는 경우	9801.00.90
19 CFR Part141.2	재수입 관세의 의무	9801.00.20 9801.00.40 9801.00.50 9801.00.60 9801.00.90

출처: <https://hts.usitc.gov> 품목분류 및 <https://www.law.cornell.edu> 관세법 참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2.1)

## 2) 재수입 면세 요건

- 물품이 수출 후 해외에서 가치의 향상, 제조 과정, 조건의 변화 없이 수출 후 3년 이내 돌아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됨

- 신용문제로 해외 구매자가 물품을 거절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HTSUS 9801.00.10에 분류된다면 CBP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관세가 면제가 됨
  - 신고는 소유자, 수입자, 수취인 또는 에이전트가 서류를 2부씩 준비해야 함
  - 수출 시 관세를 환급받았거나 내국세가 면제되었다면 재수입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CBP Form 3311을 신청하거나 전자신고 시 수입 운송수단, 도착 날짜, 물품이 반환된 국가, 물품의 가치를 작성해야 함
  
- 컨테이너와 케이스의 재수입의 경우 미국산 물품인지 외국산 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 시 재수입 면세가 됨<sup>47)</sup>
  - 미국산 물품인 컨테이너와 케이스가 물품의 이동과 선적에 사용 후 재수입될 때
    - 재사용 목적으로 이용되며 제품을 포함하여 수입되거나, 국내제품 수출운반에 사용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처리함
    - 재수입 시 제품을 운반해 오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산 물품이라는 것이 쉽게 증명된다면 수입신고 없이 처리될 수도 있음
  - 외국산 물품(foreign production)인 컨테이너와 케이스가 이동과 선적에 사용 후 재수입될 때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함
    - 최초 컨테이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물품의 이동과 선적에 사용에 재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품을 운반하여 수입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관세가 면제됨
    - Form 4455로 신청하거나 전자신고 해야 함
    - [그림 III-1]에서 수출했던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포함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화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항만장은 외국 화주의 증명서를 검사한 후에 수입신고서 없이 처리 가능함

---

47) 19 CFR 10.7

## [그림 III-1] 외국 화주 증명서

I, \_\_\_\_\_, of \_\_\_\_\_, do hereby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substantial containers and holders mentioned in (the annexed invoice) (invoice No. \_\_\_\_ of \_\_\_\_, 19\_\_) \* are of the manufacture of \_\_\_\_\_ and wer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t the port of \_\_\_\_\_, per S.S. \_\_\_\_\_ on \_\_\_\_\_, 19\_\_, and that the same are being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empty) filled with \_\_\_\_\_ (holdings \_\_\_\_\_).\*

\* Cross out inapplicable words.

Shipper

출처: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7>(검색일자: 2017. 2. 1)

- 과학적·교육적 목적으로 실험, 시험, 전시회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HTSUS 9801.00.40) 재수입 면세가 됨
  - 신고 시 수출증명서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한 것
  - 신고서를 내거나 또는 전자신고를 해야 함
    - 미국에서 보내진 물품으로 해외에서 오직 과학적이고 교육적으로 일시적인 사용만을 해야 하며 신고서류는 Form 4455이 필요함
  -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은 [그림 III-2] 양식의 신고가 필요함
  - Form 3311 같은 수출 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세관장이 인정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그림 III-2] 최종 수취인 신고서

Port of \_\_\_\_\_, Port Director's Office, \_\_\_\_\_, 19\_\_.

I, \_\_\_\_\_, declare that the several articles described in the annexed entry a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identical article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_\_\_\_ day of \_\_\_\_\_, 19\_\_, by \_\_\_\_\_ (Actual shipper) address \_\_\_\_\_, for the account of \_\_\_\_\_, address \_\_\_\_\_ that they are returned to \_\_\_\_\_, address \_\_\_\_\_, for the account of \_\_\_\_\_, address \_\_\_\_\_ that the said articles were exported solely for temporary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and for no other use abroad than for exhibition, examination, or experimentation; that they are being returned without having been changed in condition in any manner, except by reason of their bona fide use as follows:

(Describe change in condition)  
(Ultimate consignee)

출처: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67>(검색일자: 2017. 2. 1)

- 재수입 면세를 신청할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신고를 하며, 신고 시 서류로는 송장, 포장 명세서 등과 함께 CFR 규정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 화주 증명서, [그림 III-2] 최종 수취인 신고서, 부록 I 「Form 3311」, 부록 II 「Form 4455」 등 물품별로 필요서류가 다름

다. 미국의 재수입 관련 기타규정

1) 전시회 및 경주 등에 나가는 동물

- 가축이나 다른 동물들이 일시적으로 전시회, 서커스, 동물원, 경주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재수입 면세가 됨<sup>48)</sup>

- 면세를 받기 위해서 수출증명서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동일한 신고를 해야 함
  - 동물의 원산지가 국내, 해외인 경우 수입신고서류는 모두 Form 4455를 제출해야 함
  - 외국에서 출생한 동물을 서커스나 동물원에 참여하거나 전시회를 위해 외국으로 데려갈 경우, 동물의 출발 전에 동물들의 목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세관장은 Form 301에 대한 채권(bond)을 받거나 다른 서류(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함
- 서커스나 동물원 또는 박람회를 위해 수출되었던 동물이 돌아올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를 받는 경우도 있음<sup>49)</sup>
- 품목들을 수출하기 전에 Form 4455를 제출했거나 전자신고를 한 경우
  - 관세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내국세를 냈고 환급받지 않은 경우
  - 돌아올 때 사본 Form 4455 첨부하거나 동일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 2) 국경을 넘어간 동물

- 동물이나 사육한 동물이 국경을 잘못 건너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는 주인이 동물들의 일시적 방목만을 위해서 외국으로 건너가 8개월 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가 됨<sup>50)</sup>
- 국내에서 사육된 동물에 해당되고 국경을 넘었다가 새끼와 함께 30일 이내에 돌아올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sup>51)</sup>
  - 30일을 경과하여 동물이 다시 되돌아올 때 가까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농무부의 동식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몰수나 압류당할 수 있음

48)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66>

49) HTSUS 9801.00.50, 9801.00.60

50) HTSUS 9801.00.90

51) 19 CFR Part 10.74

### 3. 중국

#### 가.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

-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법정 감면, 특정 감면, 그리고 임시 감면으로 나누어짐<sup>52)</sup>
  - 법정 감면이란 ① 법률로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기타 물품 ② 관세 부과  
의 실익이 없는 소액물품 또는 상업가치가 없는 물품 ③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④ 통관 전 파손된 물품 ⑤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상에서 감면을 규정한 물품  
등에 대해 감면·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 신청 및 화물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을 말함
  - 특정 감면이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  
접 부여하여 통관 전 별도의 감면세 신청에 대해 해관의 심사 및 타 용도 전용을 금  
지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또는 정책성 감면을 말함
  - 임시 감면이란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을 말함
  
- 중국은 산업진흥 등의 특정 목적이 부여된 관세 감면제도와 임시 감면제도를 법정 감면  
과 분리하여 별도 법령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서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  
지 않는 일반적인 관세 감면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를 가진 세금 감면대상 물품과 수출입 세  
수 우대정책 규정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물품은 「해관총서령 제179호 수출입화물 감  
면세 관리방법」에 따라 별도 적용을 받음

52)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pp.53-55 및 중국 「해관법」 제56조(감면세), 제57조(특정 물품 감면세), 제58조(임시감면세 결정).

## 나. 중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 중국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반품물품(退运货物)과 일시반출물품(暂时出境货物)이 재수입될 때 「해관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관세 및 국내관련 세금을 면세해주는 법정 감면에 해당함
  -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및 「해관총서령」 제124호의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에서 재수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의 요건을 규정함
  
- 중국의 반품물품(退运货物)은 중국 재수입 면세의 대표적인 사례임
  - 반품물품이란 외국에 수출했다가 품질문제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클레임물품 또는 하자물품 등으로 불림
  - 중국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므로 중국 물품의 위약 수출 시 수출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재수입 면세와 함께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재반입이 예상되는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나 화물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는 해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시반출(暂时出境货物)물품은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시반출 재수입은 해관의 비준을 받아 전시용품, 경기용품, 샘플, 시험기기 등을 외국에 일시 반출하였다가 반출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간 내에 재반입한 경우임

### 1) 반품 재수입

#### 가) 반품 재수입 면세

- 중국은 품질 혹은 규격 원인에 의해 물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반입한 경우 수입관세 및 세관 대리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음<sup>53)</sup>

- 또한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물품이 수출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들어온다면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수출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sup>54)</sup>
- 수출물품이 반품되는 사유는 오로지 품질 또는 규격의 상이인 경우만 해당되며 그 범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sup>55)</sup>
  -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품질적합 여부 테스트 결과 불합격하는 경우
  - 수출물품이 실제 모델과 구매계약서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 오(誤)선적으로 실제 수출물품이 계약 수량과 상이한 경우<sup>56)</sup>
    - 벌크 상태의 수출물품이 계약보다 부족한 상태로 통관되어 당해 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부족 부분에 상응한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
    - 수출물품이 파손, 품질불량, 및 규격 미달의 사유로 실제 계약수량보다 부족하여 수출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배상한 경우
  - 중국 해관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반품을 명한 경우
  - 수출물품이 연고로 인해 수출되지 못하고 해관에 통관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sup>57)</sup>
  -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된 경우로서 계약물품 손상, 수량 부족 및 품질 등급이 떨어지는 물품 등이나 당해 계약상 패널티 규정으로서 배달 지연으로 인한 벌금 등이 반품 재수입 사유에 해당됨<sup>58)</sup>
    - 물품 생산설비 가동의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 등 간접적인 반품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53)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 57조.

54)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이하 수출입관세조례) 제43조.

55)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56)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국 현지 재수입 면세 적용 관련」, [http://www.kita.net/global\\_sh/customer/qna/qna\\_view\\_admin.jsp](http://www.kita.net/global_sh/customer/qna/qna_view_admin.jsp)(검색일자: 2016.12.30.)

57) 상동

58) baidu, 「无代价抵偿货物」, <http://baike.baidu.com/item/%E6%97%A0%E4%BB%A3%E4%BB%B7%E6%8A%B5%E5%81%BF%E8%B4%A7%E7%89%A9/1877279?fr=aladdin44>(검색일자: 2017.2.6.)

- 반품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속 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up>59)</sup>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B/L)등 무역계약 기본서류
  - 원 수출신고필증, 환급단 및 수출제반서류
  - 서면으로 서명한 반품합의서
  - 반품 사유서
  - 외화핵소단(外匯核銷單, 이미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已核銷”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 일 것)
  - 국세국 발행 <수출상품 반품 기보세증명> 혹은 <미환급증명>
  -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규격 부적합 또는 결손·수량부족 사실 증명서
- 납세의무자는 해관총서 수입신고 작성 시 무역방식 코드를 「반품화물(退運貨物)(4561)」로 기재하여야 함
- 재수입 통관수속에 대한 해관의 확인을 받으면 재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관세 및 기타 수입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함<sup>60)</sup>
- 상하이 지역의 경우 재수입 면세물품의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영업일이라고 함<sup>61)</sup>
- 나) 최초 수출관세의 환급
-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로 재수입한 물품이 최초에 수출관세 및 국내 관련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sup>62)</sup>

59)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60)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57조

61)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 이미 수출관세를 환급받았다면, 납세의무자는 환급받았던 수출 관세와 국내 관련 세금을 새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납부일자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환급 신청 시 서면으로 해관에 환급 사유를 설명하고 최초 수출관세 등 세금납부 증빙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관은 수출관세 등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환급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함<sup>63)</sup>
- 납세의무자가 기타 환급과 관련된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수출관세 등의 환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up>64)</sup>
- 환급신청서
  - 원 수출신고필증, 세액 납부서, 상업송장
  - 물품 재반입에 의한 수입신고서
  - 쌍방이 작성한 반품 협의서,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재납부 증명서
  - 환급 또는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sup>65)</sup>
  - 필요한 경우 품질 불량 및 규격 부적합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sup>66)</sup>

62) 「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및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2조

63)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6조

64)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2조

65) 수량 부족으로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에 한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국 현지 재수입 면세 적용 관련」, [http://www.kita.net/global\\_sh/Customer/qna/qna\\_view\\_admin.jsp](http://www.kita.net/global_sh/Customer/qna/qna_view_admin.jsp)(검색일자: 2016.12.30.)

66)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6조

다) 대체품 수출시 수출관세의 면세

- 중국은 반품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출관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대체품을 무상 수출함으로써 재수출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sup>67)</sup>
  - 대체품 수출로 수출관세를 면세받으려면 수출신고 시 원수출물품의 세금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수출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서류 제출을 할 수 없으므로 대체품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 중국은 최초 수출물품이 세관 통관 이후 품질 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 등으로 재수입되고 수출자가 이를 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러한 대가 없는 변상화물(이하 대체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세해줌
  - 대가 없는 변상화물이란 수출입된 물품이 세관 통관 이후 화물의 결손·수량 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 등이 무상으로 보상 또는 교환하는 물품으로서 계약서에 규정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적합한 물품을 말함<sup>68)</sup>
  - 만약 대체품이 최초 수출입한 물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면 통관 수속 시 해관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sup>69)</sup>
  
- 대체품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원래 물품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한 중 해당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대체품의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sup>70)</sup>

67) 최초 수입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문제로 해외 반품한 경우로서 최초 수입관세와 국내관련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경우, 무상대체품을 수입 시 면세한다는 내용에 따라 대체품 수출시 동일한 실무과정을 진행할 것임. 출처: baidu, 「无代价抵偿货物」, <http://baike.baidu.com/item/%E6%97%A0%E4%BB%A3%E4%BB%B7%E6%8A%B5%E5%81%BF%E8%B4%A7%E7%89%A9/1877279?fr=aladdin44>(검색일자: 20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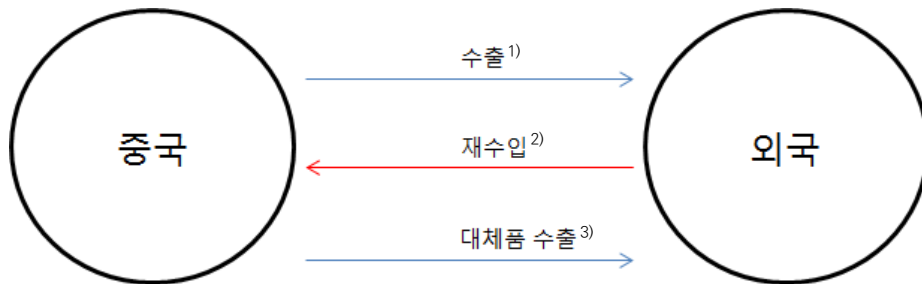
68)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29조

69)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3조

70)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0조

- 납세자는 대체품의 수출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sup>71)</sup>
- 원수출신고서(통관서)
  - 원수출물품이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입통관서
  - 원수출물품의 세금 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
  - 매매 당사자 쌍방 간에 체결한 손해배상 협의서
  -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원수출물품의 결손·수량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그림 III-3] 중국의 재수입 면세구조 요약



- 주: 1) 수출 당시 수출관세 납부  
 2) 반품 재수입인 경우 수입관세 면세 및 최초 수출관세 환급  
 3) 대체품 수출시(원수출관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 수출관세 면세  
 출처: 저자작성

## 2) 일시반출 재수입

- 중국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전시회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다음의 물품을 외국에 일시 반출입하였다가 반출입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한 내에 재반입 또는 재반출한 경우 수입관세 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sup>72)</sup>

71)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2조

72) 「수출입관세조례」 제42조

- 전시회·교역회의 및 유사활동 중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문화·체육교류 활동 중 사용된 연출·경기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뉴스보도 진행이나 영화·텔레비전 촬영제작에 사용된 측정기구·설비 및 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과학연구·의학·교학 활동에 전시 사용된 설비 및 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견본품
  - 설치·성능시험·검사측량설비 제공 시 사용된 측정기구 및 공구
  - 화물을 담은 용기
  - 기타 비상업목적에 사용하는 화물
- 납세의무자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고자 할 때 해관에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sup>73)</sup>
- 일시 반입한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 반출되지 않거나, 일시 반출한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 반입되지 않으면 해관은 관세를 징수함<sup>74)</sup>
-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관에 수출입 수속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
- 일시 반출입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 중국 밖으로 재 반출 되거나 중국 안으로 재반입되지 않았고, 납세자가 기한 만료 전 수출입 통관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세금 징수와 함께 가산금을 징수함<sup>75)</sup>

---

73) 상동

74)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3조

75)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5조

○ 가산금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납세자가 납세신고한 날까지 1일당 납세액의 0.05% 요율을 더한 금액으로 함

□ 일시 반출입 화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인 경우 해관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1개월 단위로 세금을 5년간 부과함<sup>76)</sup>

○ 세금의 징수기한은 60개월로 하며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세금의 부과 기준일은 화물의 통관일이 됨

#### 다. 중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 1) 재수입 물품의 '원상태'범위 사례

□ 중국의 반품화물에 대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상태'로 재반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재수입신고 시 물품 상태와 당초 수출 시 상태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원상태의 요건은 해관에서 수출 및 수입 신고된 내용을 보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특히 상품 HS Code, 품명, 규격사이즈 등 물품과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함<sup>77)</sup>

□ '원상태' 요건에 대해 중국은 별도 법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수입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 않는 한 '원상태'로 반입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음<sup>78)</sup>

76)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4조.

1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은 ①과 ②를 더하여 계산 됨

① 매월 부과되는 관세 = 관세총액 × (1/60)

② 매월 부과되는 수입 단계의 대리 징수세 = 대리징수세 총액 × (1/60)

77)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78) 【贸易实务】外贸产品有问题，退运返修如何处理？, [http://mp.weixin.qq.com/s?\\_\\_biz=MzAxND](http://mp.weixin.qq.com/s?__biz=MzAxND)

- 즉, 계약에서 정한 품질 혹은 규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물품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닌 물품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상태’가 보존된 것으로 보고 재수입 면세를 인정해준다는 것임<sup>79)</sup>
- 예로 컨테이너 분할(devanning), 검사, 화학실험, 설치 및 시운전 등은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 또는 규격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조치이며 계약상 필요한 절차로 볼 수 있음
  - 중국 해관은 통관 진행 시 물품의 특징, 속성, 실제 재수입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원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함
- 단, 중국은 수출물품의 일부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비록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수입 면세를 제한하고 있음
  - (부분품 재수입 면세 제한) 중국에서 수출한 완성차의 엔진에서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 부분만 재반입을 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관에서는 엔진만 수입된 것은 수출물품의 원상태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수입으로 과세 처리하였음<sup>80)</sup>

## 2) 재수입 물품의 신고내용 정확성

- 중국은 원상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 당시의 정보가 수입과 비교하여 상이해지는 경우 신고내용의 정확성 불충분으로 보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움
  - (품명오류) 휴대형 평삭기가 반품되어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관 심사 결과 실제 물품은 탁상용 평삭기로 판명되어 동일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무역방식으로 처리됨<sup>81)</sup>

Q4MzQzMQ==&mid=2649809174&idx=4&sn=6cf38a3fc979cedf07b9d04f6dac8550&chksm=8396eb9eb4e162881ba5513466a56440e2a06f071a9aef8f4ce6bc361d53254446e9d68c43b8&mpshare=1&scene=5&srcid=0124oClZc6jWBJdyvtlZqlcc#rd(검색일자: 2017.1.26.)

79) 상동

80)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 3) 재수입 물품의 반품사유 요건

- 중국은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로 인해 반품 재수입되는 물품 등 반품사유가 계약 이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중국 해관은 반품의 사유가 거래처의 단순 변심 또는 거래처 파산 등으로 인한 인수 거절 등 계약이행의 간접적인 사유라면 재수입 면세를 불허한다고 함<sup>82)</sup>
  - (보세구 수출입) 우리나라의 A는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중국 보세구로 반출(수출)한 뒤, 중국 내 새로운 거래처를 발견하여 원상태 물품 그대로 내수용으로 반입(수입)하면서 재수입 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재수입 사유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함<sup>83)</sup>
  
- 반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제3자 검사기관에 재수입물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수입 면세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명백하게 반품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각종 테스트와 검측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81)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82) 【贸易实务】外贸产品有问题，退运返修如何处理? (검색일자: 2017.1.26.)

83)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포털, [http://china.kita.net/chinaportal/bizinfo/qna/qna\\_list.jsp?sCmd=VIEW&nPostIndex=171355&nPage=3](http://china.kita.net/chinaportal/bizinfo/qna/qna_list.jsp?sCmd=VIEW&nPostIndex=171355&nPage=3)(검색일자: 2017.1.12.)

## 4. 일본

### 가. 일본의 관세 감면제도<sup>84)</sup>

- 일본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국제관행 또는 국제예의 존중, 국제협력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시 관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관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 관세 감면제도는 항구적인 감면과 잠정적인 감면 2가지로 분류됨
  - 항구적인 감면은 「관세정률법」에서, 잠정적인 감면은 「잠정조치법」에서 규정함
  - 조약 중 감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약 자체로 관세 감면이 이루어짐
- 일본은 감면을 형태에 따라 무조건 감면과 해제조건부 감면으로 분류하고 있음
  - 무조건 감면은 수입 시 감면이 확정되며 추후 관세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해제조건부 감면은 수입 시 일정한 해제조건을 부여하며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부여된 해제조건을 만족해야 함
    - 해제조건부 감면은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 및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으로 나뉨
    -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규정된 용도 외 사용 시 효과가 상실되어 관세가 부과됨
    -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의 경우 일반적인 해제조건부로 감면함과 동시에 수입 후 일정기간 수익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세 징수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짐(세관장의 사전승인 제외)
- 무조건 감면에는 변질, 손상 등 감세,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된 물품 감세, 생활관련 물품 감면세, 무조건 면세, 재수입 감세 등이 있음

84) 관세청 일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에는 특정 용도 면세, 재수출 면세 및 감세 등이 있으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에는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와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가 있음

〈표 III-4〉 관세정률법에 따른 관세 감면제도 분류

감면 분류	감면규정
무조건 감면	변질, 손상 등인 경우의 감세(제10조 1항)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감세(제11조)
	생활관련 물자의 감면세(제12조)
	무조건 면세(제14조)
	재수입 감세(제14조의 2)
	외국에서 어획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제14조의 3)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제16조)
	국산원료품 사용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대체면세)(제19조의 2 제1항)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	특정용도 면세(제15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담배에 한함)(제16조)
	재수출 면세(제17조)
	재수출 감세(제1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제13조)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제19조)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검색일자: 2017.1.24.)

- 「관세잠정조치법」에서는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및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는 무조건 감면세에 해당하며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는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에 해당함

〈표 III-5〉 잠정조치법에 따른 감면제도 분류

임시감면(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검색일자: 2017.1.24.)

#### 나. 사전교시제도(관세 감면)<sup>85)</sup>

- 일본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 해당 화물에 대한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세관에 서면으로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두고 있음
  - 감면관련 사전교시제도는 서면을 원칙으로 함
  - 사전교시 답변서의 답변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최장 3년) 내에는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바뀐 경우는 제외함)
  
- 세금감면 관련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수입 예정화물에 따른 세금 감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수입 통관 시 세관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화물의 개요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세금 감면 조회용 C-1000 호-22) 1부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사진, 도면 등)를 제출하여 사전교시를 신청해야 함
  - 위의 서류는 조회 대상 화물의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85)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i>(검색일자: 2017.1.24)

- 요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사전교시 회답서에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기재하여 통보함
  - 세관은 조회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함
  
- 답변 내용에 관해 별도의 제안이 있는 경우 사전교시 회답서에 관한 의견신청서 (C-1001호-2) 1통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단, 제안은 사전교시 답변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에서 조회)나 이메일로 사전교시 요청은 가능하나 서면신청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단, 이메일로 교시 요청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면신청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됨
    - 전환이 되었을 시 세관에서는 이메일 조회를 서면 질의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통지(세금 감면 답변용)(C-1000호-26)를 요청자의 이메일로 송부함
    - 3전환 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사전서면교시의 경우와 같으며 답변 내용은 해당 답변 후 3년 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바뀐 경우는 제외함)
  - 인터넷에 의한 사전교시 조회서 (세금 감면 조회용)(C-1000호-25)에 날인 또는 서명을 첨부한 조회,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조회, 기타 사전 서면교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조회 등은 서면 질의에 준하는 취급 전환 대상임
  
- 이 메일로 요청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공 화물에 관한 조회
  - 사후 조사 항소중 또는 소송중 등 세금 감면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화물에 관한 조회
  - 수입신고 물품에 관한 조회

-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입화물의 확인 기타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관한 조회
  - 화물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해당 화물의 성질, 용도 등을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조회
- 사전 서면교시 및 이메일 교시 중 서면 신청으로 취급되는 교시에 대한 답변은 세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수입자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 사전교시 답변 (세금 감면)에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음<sup>86)</sup>
- 조회자 이름이나 거래 관계자 이름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화함
  - 단, 정보 공개로 불이익을 받을 시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다. 일본의 재수입 면세제도

- 일본에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산품 비과세 또는 이중과세배제 등의 관점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내용은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 면세 보완규정으로 「관세정률법」 제14조 2에서 재수입 감세를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 규정은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재수입물품 및 제11호 재수입물품의 용기류에 해당함
  -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는 국제관례, 사회통념, 사회정책 등의 이유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협의의 면세와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의 무조건 면세로 분류됨

86)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  
(검색일자: 2017.1.24.)

-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재수입물품에서는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허가 시의 물품 성질, 형상<sup>87)</sup>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표 III-6〉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의 분류

협정의 무조건 면세	재수입 물품의 무조건 면세
천황 및 내정 신분인 황족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제1호)	일본 재외공관에서 송환된 공용품(제9호)
일본에 내방하는 외국 원수 등의 물품(제2호)	
훈장, 상패 등(제3호)	재수입물품(제10호)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기증물품 등(제3호의 2)	
박람회 등 카달로그류 (제3호의 3)	재수입물품의 용기류(제11호)
기록문서 등 기타 서류(제4호)	
국가 판매품(정부 또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제5호)	
주문을 받기 위한 견본(제6호)	조난된 일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체 자재 및 항해 장비(제13호)
품질을 표시하는 라벨(제6호의 2)	
휴대품(제7호)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제14호)
이사물품(제8호)	
신체장애자용 기구 등(제16호)	
뉴스영화용 필름 등(제17호)	
소액물품(제18호)	

출처: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17. 1.22)

1) 재수입물품 재수입 면세 요건<sup>88)</sup>

-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허가 시의 물품 성질, 형상이 수입 시에 동일해야 함

87) 물품의 모양이나 상태

88)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 단,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 및 부분품에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표 Ⅲ-7〉 재수입 면세 요건

요건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	수출허가 시 성질,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아닐 것
세 부 내 용	수출물품	본체에서 분리되었더라도 해당 부분품이 수출시 성격, 모양이 동일한 경우 인정	제17조 1호 가공되는 물품 또는 가공재료가 되는 물품으로 재수출 면세적용 물품 제외
	우편물로서 수출된 사실이 분명한 물품	외국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미세한 가공 또는 수선을 하였을지라도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면 인정( 예: 나사 조임, 주유 등)	제18조 1호에 따라 대차관계 또는 청부계약 이행 관련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 재수출감면 적용 물품 제외
	선적오류로 재수입되는 물품	수출 시 노출하지 않은 필름, 촬영 후 현상되지 않은 필름, 미 녹음테이프이나 개인사용에 제공되어 녹음된 후 수입 인정	제19조 제1항 및 6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적용 물품 제외
			제19조의 2 제1항, 2항, 4항에 따라 과세 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세금 반환 등을 적용한 물품 제외
			제19조의 3 제1항, 3항에 따라 수입 시와 동일상태로 재수출 되는 경우 환급받은 물품제외
			제20조의 제1항, 2항, 4항, 5항에 따라 위약물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로 환급받은 물품 제외

출처: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15

- 세관에서는 당해 물품의 규격, 재질 등이 수출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검토하여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 시 물품과 동일할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당해 화물의 수출허가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 인증서를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89)</sup>
  - 외국산품이 재수입을 예정하였을 때 수출 시 수출의 목적과 재수입 장소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2) 재수입물품의 용기류 재수입 면세<sup>90)</sup>

- 대상 용기의 종류는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깡통, 병, 통, 항아리, 상자 자루 또는 실패, 실린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로, 물품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기타 재무대신이 지정한 용기를 대상으로 함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는 수출 시 물품 용기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도의 작업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가공되지 않아야 함
  - 최소한도의 작업은 목을 막거나, 금속제 병마개를 부착, 통조림 뚜껑 밀폐 및 손상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손상부분 용접, 부분적 도장 등) 등임
  
- 수출된 물품의 용기와 재수입되는 용기는 동일성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수출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 재질 등을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신고수량 및 기재 수량을 확인함
  - 단, 재수입 용기의 수출입 상황을 장부 등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

89)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

90)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1호

경우 용기 종류마다 수입수량, 수입 연월일, 수출수량, 재고수량 등을 관리하여 1년에 한번씩 내용이 작성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 라.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sup>91)</sup>

- 해외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출되는 금형과 관련하여 해당 금형으로 제조하는 부품의 해외생산이 종료되어 금형 재수입을 하게 되었음
- 금형에 각인된 시리얼 번호의 일부(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10자리수의 번호 중 1자리수)가 변경됐지만 금형 자체에 실질적인 변경은 없었음
  - 시리얼 번호의 변경은 해당 금형으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해서 제조된 제품이 변경된 것에 따라 달라졌으나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서 시리얼 번호가 변경되었음이 증명 가능하였음
- 시리얼 번호의 경우 동일성 확인의 주요 요소로 취급되나 일본 세관에서는 시리얼 번호 한자리의 변형은 미세한 가공의 범위로서 재수입 시 물품의 동일성은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그 밖에 연소검사를 해외에서 실시하기 위해 수출한 쿠션과 관련하여 일본 세관에서는 연소검사 후 일부 손상이 발생한 것을 재수입한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의도적인 연소검사에 의해 수출 시의 성질·형상이 바뀌어 재수입 면세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91) 일본 세관 내부자료

마.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기타 규정

1) 재수입 감세<sup>92)</sup>

□ 재수입 감세는 재수입 면세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세작업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물품 및 반송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물품이 수출 후 원래의 상태로 재수입될 시 감세함

가) 재수입 감세 적용요건

□ 재수입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환적된 보세작업에 의한 물품 또는 규정에 따라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이루어진 물품으로 감세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함

〈표 III-8〉 재수입 감세 요건

요건	1)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 ①-③중 하나에 해당	2) 1)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의 수출에 따라 관세가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된 물품
세부 내용	①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 시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 ②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의 용기류로 수출 시에 사용된 것 또는 수입 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 ③ 일본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수출된 물품으로 사고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	① 제17조 1호 가공되는 물품 또는 가공재료가 되는 물품으로 재수출 면세적용 물품 ② 제19조 제1항 및 6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적용 물품 ③ 제19조의 2 제1항, 2항, 4항에 따라 과세 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세금 반환 등을 적용한 물품

출처: 관세청 일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II』, 2012 및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제10절 참조하여 저자 작성

92) 「관세정률법」 제14조의 2

나) 재수입 감세 절차<sup>93)</sup>

- 재수입 감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수출허가서<sup>94)</sup> 및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내역이 표기된 세관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수입 물품을 제조한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에 요청하여 증명서를 받아야 함
  -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관세에 대한 증명서는 수입물품의 수출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요청하여 수입 원료품 등의 관세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수출로 인해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된 관세액은 재수입 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면세함
  - 일본에서 반송된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의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재수입 면세 물품 중 수출에 의해 이미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되었을 시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이미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관세액을 제외한 금액임
  - 위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물품의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관세액과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을 합한 것을 제외한 금액임

2)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sup>95)</sup>

-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재수입 시 면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93) 「관세정률법」 제16조의5

94) 혹은 수출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관 증명서

95)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4호

- 일본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수출된 물품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해당 물품이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 사고에 의한 반송일지라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정률법」의 재수입 면세규정(제14조 10호)과 같으나 반송된 물품의 수출 시 성질 및 형상,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사고장소 또한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5. 호주

### 가.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 1) 관세 감면 관련 사전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Schedule 4의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가능했었으나 현재는 Schedule 4의 TCO(Tariff Concession Order)<sup>96</sup> 관련 물품만 사전심사가 가능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한 별도의 사전심사 규정은 없음

#### 2) 관세의 감면제도

- 호주는 관세법상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관세율법(Customs Tariff Amendment Act 1995; 이하 관세율법)에서 12개 Schedule로 관세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96) TCO(Tariff Concession Order):호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줌

- Schedule 4에서 총 15개 대분류 하위 55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은 호주의 국내 산업 지원 및 국제 조약 이행, 수출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짐
- Schedule 4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의 15개 대분류는 아래와 같음<sup>97)</sup>
- 과학, 교육, 또는 문화 관련 물품
  - 국제기구 또는 외교관 또는 외국 관련 물품
  - 개인용품
  - 국내로 돌아오는(returned) 물품
  - 국외로 수출 예정된 물품
  - 기부 또는 유산 관련 물품
  - 트로피, 메달, 장식품, 수상품 관련 물품
  - 소액물품
  - 장애인용품
  - 식물, 의류, 신발 등
  - 운송 수단
  - 로봇이나 시제품
  - 제조관련 물품
  - 석유 관리 세금 면제품
  - 기타 물품
- Schedule 4에서는 감면물품뿐 아니라 감면물품 처리번호(Treatment code; 이하 처리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ICS(Integrated Cargo System; 이하 ICS)에서 감면품으로 분류됨
- 처리번호는 감면의 세부 분류를 나타내는 번호임(예를 들어 Item 17이 동일한 물품

97)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schedule-4>(검색일자: 2017. 2.10)

의 재수입에 대해 분류를 한다면 처리번호로 Item 17의 물품 중 일시 재수입(171)에 대해 별도 분류함)

- Schedule 4에서 처리번호와는 별도로 표기하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 이하 참조번호)는 9999로 시작하는 분류번호임
  - 참조번호는 Item 분류에 해당하는 감면 물품 중 처리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특이 조건이 필요한 물품(예: 남극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출물품 중 처리번호로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물품)을 나타내는 번호로 품목분류번호 대신 사용함
-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신청에 대한 예외는 두고 있지 않음

## 나. 호주의 재수입 면세제도

### 1) Item 17 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unaltered condition) 재수입되는 물품

- 위의 Schedule 4상 15개 대분류 중 ‘국내로 돌아오는(return) 물품’에 Item16 - Item20이 해당되며 Item 17이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 규정임
  - Item 17에서는 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내로 돌아오는 물품’에는 FTA 조약에 따른 수리 후 재수입 물품(Item 16), 보증 및 안전문제로 리콜되었던 물품(Item 18), TCO에 따른 수리물품(Item 19), 수리 및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Item 20)이 해당됨
- 호주의 재수입 면세는 호주에서 수출된 후 수리, 보수, 대체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함
  - 재수입 면세 적용 대상 물품은 호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거나 물품의 첫 번째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임<sup>98)</sup>

- 단, 수리(repair)의 경우 물품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작업에 한 해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대체품의 수입은 재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세금 납부가 유보된 채로 수출되었거나, 관세 환급,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수입신고 시 Item 17에 해당하는 재수입 면세 적용 물품 중 일시 수출 물품은 처리번호 171번으로 분류하고, 172번은 일시 수출을 제외한 기타 재수입 물품으로 분류함
- 처리번호 171번 물품은 ATA Carnet 해당 물품으로 Carnet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고 있음
  - 처리번호 172번 물품은 ATA Carnet를 제외한 품목으로 재수입 제한기간이 없음
- Item 17에 해당하는 물품 중 참조번호 9999.32.17<sup>99)</sup>로 분류되는 물품은 맥도날드섬(McDonald Island)을 포함한 남극(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에 일시적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임<sup>100)</sup>
- 호주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섬을 비롯한 극지방으로 수출되었다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의 참조번호로 분류하고 있음
- 기타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서 규정하는 용기류의 경우 호주는 재수출 면세에서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 면세에 이와 관련한 별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98) By law No. 017687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1120>(검색일자: 2017. 2. 8)

99)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schedule-4#returned>(검색일자: 2017. 4. 6)

100) By law No. 1300536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0234>(검색일자: 2017. 2. 8)

## 2) Item 17A 제세금이 유보된 물품의 재수입

- 호주는 관세의 감면, 환급 등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 호주 국내에서 제작한 물품을 동일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재수입 보완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에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수리, 보수, 대체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 중 Tradex<sup>101)</sup> 부품, 관세 환급대상 부품, 소비세 부과대상 부품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임
  - 해당 부분품이 별도 수입되었을 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적용함
  
- Item 17A에 해당하는 부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Schedule 3(일반 물품 품목분류)에서 완제품에 적용되는 품번으로 신고하며 처리번호 173번으로 ICS에서 분류하고 있음

## 다. 호주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 Schedule 4의 지침서<sup>102)</sup>에서는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함<sup>103)</sup>
  - 물품의 유지 및 보수 범위에 대해 오토바이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은 인정하나 오토바이에 스테레오 시스템을 설치하는 행위는 오토바이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재수입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를 제시하였음
  
- 호주는 특정 품목의 재수입 규정 위반에 대해 Item 21번(재수출 예정인 수리물품 또는

101) Tradex: 호주의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수출 또는 가공 후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GST를 부과하지 않는 프로그램

102) Guidelines to Schedule 4 of the Customs Tariff Act 1995 Concessional Rates of Duty , 2015, <http://www.border.gov.au/Tariffclassificationofgoods/Documents/guidelines-schedule-4.pdf>(검색일자: 2017.2.6.)

103)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1120> (검색일자: 2017.2.3)

대체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보석류가 Item 17번(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으로 다량 잘못 수입되어 규정을 정비한 사례가 있음<sup>104)</sup>

- 위 사례의 보석들은 보석 연마(polishing and cutting) 공정을 거쳐 호주 국내로 반입되었으나 당시 해당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보석들은 Schedule 3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음
- 이 사례로 Item 21에 처리코드 521을(가공, 수리, 또는 대체품으로 호주 국내에 반입 후 수출 예정인 물품) 새롭게 규정하여 보석의 연마 공정은 재수입 면세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104) Australian Customs Notice 199768, <https://www.border.gov.au/Busi/Cust/Aust/Australian-Customs-Notice-1997-68>(검색일자: 2017. 1.25)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재수입 면세 근거 법령 등

-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관세법 하위 법령에서 재수입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U.S.Code Title 19에서 하위 규정으로 19 CFR Part 10, CFR Part 141과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19 U.S.C 12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HTSUS)의 제98류에 재수입 면세 품목이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은 「해관법」 제56조 및 하위법령인 수출입관세조례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에 의해 재수입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관세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서 재수입 면세제도를 규정하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재수입 면세는 제14조 제10호에서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서 규정하는 용기류의 재수입은 제14조 제11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하위 12개 Schedule 중 Schedule 4에서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나. 감면신청 절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을 경우 예외를 두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감면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 주요국 모두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이 이루어지며 사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있음
  - 중국에서 반품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속 시 규정에 따라 상업송장, 원수출신고필증, 환급서류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시험 등에 사용된 측정기구나 화물을 담는 용기 등, 재수입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먼저 해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재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미국은 품목별로 해당하는 감면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일본은 조사한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면 사전심사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2014년 폐지를 결정함

## 다. 재수입 제한기간

- 우리나라와 중국은 재수입 면세의 적용요건으로 물품의 재수입 기한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
  - 중국의 반품 재수입은 품질 불량 혹은 규격 하자 등의 원인으로 물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 반입한 경우 수입관세와 국내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중국의 일시반출 물품 재수입은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한 내 반입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물품의 특수성에 따라 재수입 제한기간이 있는 물품과 제한기간이 없는 물품으로 나뉨
  -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물품은 3년의 기간을 둔 반면 동물의 경우 제한기간을 8개월로 두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수출된 물품의 원상태 재수입에 관한 별도의 제한기간을 설정해두지 않아 기간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재수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라. 물품의 동일성 규정

- 우리나라, 중국 및 미국은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음
  - 중국은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 등의 원인으로 동일상태(원상태) 반입한 경우에만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고 규정함
    - 다만 재수입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 않는 한 하자체크나 시운전 등 테스트를 감행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은 해외에서 제조 또는 기타의 공정으로 물품이 개조되거나 가치 변화가 없어야 함
- 일본과 호주는 규정상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일부 수리 및 가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물품의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또한 부분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허용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조세포괄주의 체제하에 통관 시 세관의 판단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열거주의 체제하에서 수출입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sup>105)</sup>

105)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 미국은 관세법령(19 CFR Customs Duties) 과 품목분류표(HTSUS 제98류)에 재수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을 열거주의 규제체제로 분류함
- 미국을 제외한 포괄주의 규제체제를 적용하는 주요국은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세관의 기준 또는 법령상 지침이 별도 있음
  - 중국은 무역계약 체결 전 물품 검사 후 계약 부적합으로 판명된 물품의 반품 시 제 3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일본과 호주는 재수입물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리 또는 가공의 사례를 법령으로 규정함

#### 마. 기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

- 중국은 반품 재수입된 물품을 대신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수출관세를 면세해주는 대체품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는 최초 수출관세를 환급받거나 대체품 재수출 시 발생하는 수출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함
- 일본은 조사국 중 유일하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의 재수입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반송된 물품과 수출 물품의 동일성 및 사고의 경중, 사고 장소 여부에 상관없이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일본과 호주는 관세를 경감, 환급, 면제받은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시 해당 물품의 경감, 환급, 면제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바. 경주마 사례 비교<sup>106)</sup>

-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마와 관련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며 재수입 면세의 감면 요건인 '전시회, 박람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범주에 경마대회가 포함되지 않아 경기 참가 후 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재수입 면세에 경주마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말의 경우 관세가 면세가 된다는 조항을 있어 재수입 면세를 받고 있음

---

106) 관세법령 정보 센터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5006S.do>  
(검색일자: 2017. 2.20)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규정 법령	관세법	CFR 연방규정집	수출입관세조례 및 수출입화물징수 관리방법(해관총 서령 제124호)	관세정률법	Customs Tariff (Schedule 4) Act 2012
감면사전심사	-	-	-	감면 사전교시	-
감면신청시기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물품의 동일성 (사용의 범위)	해외에서 제조·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	해외에서 제조의 가공이나 가치, 조건의 향상이 없어야 함	수출신고와 동일한(원상태) 물품	수출 허가 시의 성질,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부분품, 미세한 가공, 수리 허용)	수출 후 수리, 보수, 대체,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동일 물품 (유지 및 보수 작업 허용)
재수입 제한 기간	일반 재수입	2년	3년(품목별로 다름)	1년	제한기간 없음
	재수입 용기 및 연구 시험 목적	제한기간 없음		6개월 또는 세관의 연장기간	
기타 관련 규정	-		수출입화물징세 관리방법 제29조 내지 제35조의 대체품의 면세	관세정률법 제14조의 2 재수입 감세 관세정률법 제14조 14호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	Item 17A 제세금이 유보된 동일물품의 재수입

출처: 저자 작성

## 2.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 유일하게 감면심사 신청 시 조건에 따라 수입신고 후 신청도 허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감면 신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재수입 면세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일본, 호주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두어 재수입을 통제하고 있음
  - 미국은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가 제한기간 측면에서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임
- 조사국 중 일본은 유일하게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운영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세관 답변서의 내용은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 적용되므로 통관 시 신속처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였음
- 재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국 모두 가공, 수리되지 않은 원상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호주의 경우 보수 및 유지의 일정 부분을 허가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었음
- 관세청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품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재수입 면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재수입 면세 관련 비교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감면규정 정비 시 호주 및 일본과 같이 재수입 물품의 동일성 요건 중 부분 품이나 물품의 유지 및 보수작업 허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례를 참조해볼 수 있음

## 참고문헌

- 관세청(일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사항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성한경·이민선·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9.
-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 무역』, 2006년 1월호, 2006. 1.
-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 1.
- 창원세관, 『2014년 개정 「관세법」등 설명회』, 2014. 2. 12.
- 하병기, 「한국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009. 9.

### <웹사이트>

관세청 보도자료,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http://english0.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GBL4ZJ7Lv0Vyv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siteId=main&s](http://english0.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GBL4ZJ7Lv0Vyv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siteId=main&s)

earchCtgry=&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95&recordCountPerPage=10 (검색일자: 2017.1.25.)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최고경영자 간담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688> (검색일자: 2017.2.13.)

관세법령 정보 센터,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5006S.do> (검색일자: 2017. 2.20)

국가 법령정보,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7.1.15.)

국가기록원,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http://theme.archives.go.kr/R/participation\\_gov\\_ebook/eBook\\_Contents/script\\_v1/open.jsp?BName=1112200000001701420040831&BID=20032&PageNo=0&&SID=5&BStyle=0&Title=%B0%B3%C1%A4%B1%B3%C5%E4%C7%F9%BE%E0+200](http://theme.archives.go.kr/R/participation_gov_ebook/eBook_Contents/script_v1/open.jsp?BName=1112200000001701420040831&BID=20032&PageNo=0&&SID=5&BStyle=0&Title=%B0%B3%C1%A4%B1%B3%C5%E4%C7%F9%BE%E0+200) (검색일자: 2017.1.9.)

기획재정부,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http://mos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cD1m1C-ekOtQHkwd+n9vaih4.node30?atchFileId=ATC\\_H\\_OLD\\_00004095966&fileSn=466057](http://mos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cD1m1C-ekOtQHkwd+n9vaih4.node30?atchFileId=ATC_H_OLD_00004095966&fileSn=466057) (검색일자: 2017.2.7)

안성상공회의소, 「再수입 면세대상 범위 무역업체 관심 고조」, [http://anseong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2961&subMenuId=&communityKey=B0123&boardId=553&act=VIEW](http://anseong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2961&subMenuId=&communityKey=B0123&boardId=553&act=VIEW) (검색일자: 2017.2.28.)

스포츠경향, 「경주마는 국제대회 때마다 관세 내라 세관방침에 업계 황당하다 반응」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08211711003&sec\\_id=561501&pt=nv](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08211711003&sec_id=561501&pt=nv) (검색일자: 2017. 2.21)

택스넷, <http://www.taxnet.co.kr> (검색일자: 2017.1.26)

한중무역투자정보망, <http://koreachina.mke.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자: 2017.2.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검색일자: 2017.2.14.)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국 현지 재수입 면세 적용 관련」, [http://www.kita.net/global\\_sh/Custom/qna/qna\\_view\\_admin.jsp](http://www.kita.net/global_sh/Custom/qna/qna_view_admin.jsp) (검색일자: 2016.12.30.)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포털, 「보세구역 재수입에 대한 관세규정 문의」,  
[http://china.kita.net/chinaportal/bizinfo/qna/qna\\_list.jsp?sCmd=VIEW&nPostIndex=171355&nPage=3](http://china.kita.net/chinaportal/bizinfo/qna/qna_list.jsp?sCmd=VIEW&nPostIndex=171355&nPage=3) (검색일자 : 2017.1.12.)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17.1.22.)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17.1.24.),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17.1.24.),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  
(검색일자: 2017.1.24.),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  
(검색일자: 2017.1.24.)

baidu, 「无代价抵偿货物」, <http://baike.baidu.com/item/%E6%97%A0%E4%BB%A3%E4%BB%B7%E6%8A%B5%E5%81%BF%E8%B4%A7%E7%89%A9/1877279?fr=aladdin44> (검색일자 : 2017.2.6.)

tradeinvest, 「外贸产品有问题, 退运返修如何处理?」, [http://mp.weixin.qq.com/s?\\_\\_biz=](http://mp.weixin.qq.com/s?__biz=)



# 부록 I. Form 33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CLARATION FOR FREE ENTRY  
OF RETURNED AMERICAN PRODUCTS**

19 CFR 7.8, 10.1, 10.5, 10.66, 10.67, 12.41, 123.4, 143.23, 145.35

Form Approved  
OMB No. 1651-0011  
Exp. 03-31-2016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1. PORT		2. DATE		3. ENTRY NO. & DATE	
4. NAME OF MANUFACTURER		5. CITY AND STATE OF MANUFACTURE			
6. REASON FOR RETURN		7. U.S. DRAWBACK PREVIOUSLY		8. PREVIOUSLY IMPORTED UNDER HTSUS 9813.00.05?	
		<input type="checkbox"/> CLAIMED <input type="checkbox"/> UNCLAIM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9. MARKS, NUMBERS, AND DESCRIPTION OF ARTICLES RETURNED				10. VALUE*	
<small>* If the value of the article is \$10,000 or more and the articles are not clearly marked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U.S. manufacturer, please attach copies of any documentation or other evidence that you have that will support or substantiate your claim for duty free status as American Goods Returned.</small>					
11.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above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the articles described above are the growth,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returned without having been advanced in value or improved in condition by any process of manufacture or other means; that no drawback bounty, or allowance have been paid or admitted thereon, or on any part thereof; and that if any notice(s) of exportation of articles with benefit of drawback <input type="checkbox"/> was <input type="checkbox"/> were filed upon exportation of the merchandise from the United States, such notice(s) <input type="checkbox"/> has <input type="checkbox"/> have been abandoned.					
12. NAME OF DECLARANT		13. TITLE OF DECLARANT			
14. NAM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If any)		15. SIGNATURE (See note)			
16. SIGNATURE OF AUTHORIZING CBP OFFICER					
NOTE: If the owner or ultimate consignee is a corporation, this form must be signed by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secretary, or treasurer of the corporation, or by any employee or agent of the corporation who holds a power of attorney and a certificate by the corporation that such employee or agent has or will have knowledge of the pertinent fact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11.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6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 <sup>th</sup>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

CBP Form 3311 (08/11)

출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3311-declaration-free-entry-returned-american-products>(검색일자: 2017. 2. 15)

## 부록 II. Form 445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19 CFR 10.8, 10.9, 10.88, 148.1, 148.8, 148.32, 148.37 (NOTE: Number of copies to be submitted varies with type of transaction. Inquire at Port Director's office as to number of copies required.)

OMB Control Number: 1651-0010  
Expiration Date: 08/31/2019

<b>VIA (Carrier)</b>	<b>B/L or INSURED NO.</b>	<b>NO.</b>	
<b>NAME, ADDRESS, AND ZIP CODE TO WHICH CERTIFIED FORM IS TO BE MAILED (If Applicable)</b>	<b>ARTICLES EXPORTED FOR:</b>		
	<input type="checkbox"/> ALTERATION* <input type="checkbox"/> PROCESSING*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 <input type="checkbox"/> USE ABROAD <input type="checkbox"/> REPLACEMENT		
	* NOTE: The cost or value of alterations, repairs, or processing abroad is subject to CBP duty.		
LIST ARTICLES EXPORTED			
Number Packages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b>SIGNATURE OF OWNER OR AGENT (Print or Type and Sign)</b>		<b>DATE</b>	
The Above-Described Articles Were:			
EXAMINED		LADEN under my supervision	
<b>DATE</b>	<b>PORT</b>	<b>DATE</b>	<b>PORT</b>
<b>SIGNATURE OF CBP OFFICER</b>		<b>SIGNATURE OF CBP OFFICER</b>	
CERTIFICATE ON RETURN			
Duty-free entry is claimed for the described articles as having been exported without benefit of drawback and are returned unchanged except as noted: (use reverse if needed)			
<b>SIGNATURE OF IMPORTER (Print or Type and Sign)</b>			<b>DATE</b>
<i>NOTE: Certifying officers shall draw lines through all unused spaces with ink or indelible pencil.</i>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10.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0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출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3311-declaration-free-entry-returned-american-products>(검색일자: 2017. 2. 15)

## 부록 Ⅲ. 중국 반품 검사 신청서 양식

의뢰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업체명(한글) :		중국수출자 업체명(영문) :	
담당자 :	TEL :	담당자 :	TEL :
우편번호 :	Email :	우편번호 :	Email :
***중요***		신청인 한국수입자 아닌경우만 입력	
반품 명칭(NAME):		한국수입자 업체명(한글):	
반품 금액(VALUE):			
반품 수량(AMOUNT):		담당자 :	TEL :
반품 순중량(NET WEIGHT):		우편번호 :	Email :
***중요***			
검사장소 주소(한글)			
검사현장 담당자(대리인)		TEL :	
검사비용 지급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중국수출자 <input type="checkbox"/> 한국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체			
<b>검사비용 지급처(기타업체시) :</b> 담당자 :                      TEL :                      Email :			
증서원본 수취인 정보(국내에 발송시 한글로 작성;중국해외에 송부시 영문으로 작성)			
증서원본 수취인 업체명 :			
주소+우편번호:			
담당자 :	TEL :	Email :	
<b>첨부파일:</b> 하기 파일은 유효한 신청의 구성입니다 1. 중국에서 수출 시의 세관신고서; 2. 중국에서 수출 시의 B/L,Packing list, Invoice; 3. 부적합 설명서(포함내용:부적합 판정 기준;부적합 사진또 시험보고서등); 4. 반품합의서(수출입자 양쪽 도장 받아야함) 5. 전자세금계산서 요청내역과 검사비용 지급업체 사업자등록증(한국업체 지급시) 6. 기타 문서(필요시)			
<b>신청인 성명:</b> 본 신청인은 상기 신청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책임지며, 중국법률, 중국정부 주관기관의 관련규정을 따라, 상기 상품에 대해 CCIC KOREA에게 검사의뢰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싸인/날인 ) :		신청일자 : 2017년 1월 12일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 부록 IV.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1)

附件 3

**转账退税申请书 (格式一)**

编号: \_\_\_\_\_

\_\_\_\_\_ 海关:

根据你关签发的税款专用缴款书(编号: \_\_\_\_\_), 本纳税人已按规定缴纳税款。按照有关规定, 现申请退税(及由此产生的银行利息), 请予核准。

1. 已缴税款金额:  
关税\_\_\_\_\_元, 增值税\_\_\_\_\_元, 消费税\_\_\_\_\_元, ……

2. 申请退税理由:

3. 申请退还金额:  
关税\_\_\_\_\_元, 增值税\_\_\_\_\_元, 消费税\_\_\_\_\_元, ……

4. 申请人名称:

5. 开户银行:

6. 开户银行账号:

申请人签章:  
年 月 日

申请人联系地址: \_\_\_\_\_ 邮政编码: \_\_\_\_\_  
联系人: \_\_\_\_\_ 电话: \_\_\_\_\_

注: 《转账退税申请书》一式二联, 第一联随原缴款书复印件送国库, 第二联海关留存。

---

说明: 1. 此申请书适用于以银行划转方式退还税款的情况。  
2. “申请退还金额”中所涉及的税种应与原缴款专用缴款书上所列关税、增值税、消费税或其他实际项目一致。  
3. 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第 52 条第 2 款规定, 纳税义务人发现多缴税款的, 可自缴纳税款之日起 1 年内要求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同期活期存款利息。  
4. 此申请书需附原缴款专用缴款书复印件各一份。  
5. 此申请书需申请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

김경환 / 차이나티스크 / 2015-07-14 18:08:49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 부록 V.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2)

**现金退税申请书（格式二）**

编号：\_\_\_\_\_

\_\_\_\_\_海关：

根据你关签发的税款专用缴款书（编号：\_\_\_\_\_），本纳税人已按规定缴纳税款，按照有关规定现申请退税（及由此产生的银行利息），请予核准。

1. 已缴税款金额：  
关税\_\_\_\_\_元，增值税\_\_\_\_\_元，消费税\_\_\_\_\_元，……

2. 申请退税理由：

3. 申请退还金额：  
关税\_\_\_\_\_元，增值税\_\_\_\_\_元，消费税\_\_\_\_\_元，……

4. 取款人姓名：

5. 取款人单位：

6. 取款人有效身份证明号码：

申请人签章：  
年 月 日

申请单位联系地址：\_\_\_\_\_ 邮政编码：\_\_\_\_\_

联系人：\_\_\_\_\_ 电话：\_\_\_\_\_

注：《现金退税申请书》一式二联，第一联随原缴款书复印件送国库，第二联海关留存。

---

说明：1. 此申请书适用于纳税人以现金方式缴款，现要求直接退付现金的情况。  
2. “申请退还金额”中所涉及的税种应与原缴款专用缴款书上所列关税、增值税、消费税或其他实际项目一致。  
3. 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第52条第2款规定，纳税义务人发现多缴税款的，可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要求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同期活期存款利息。  
4. 此申请书需附原缴款专用缴款书复印件各一份。  
5. 此申请书需申请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

김경환 / 차이나데스크 / 2015-07-14 18:08:49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 부록 VI.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 (세금 감면 조회 용 C-1000호-22)

受付番号 <small>(税関記入欄)</small>	접수 번호 <b>(세관 기입란)</b>	登録番号 <small>(税関記入欄)</small>	등록번호 <b>(세관 기입란)</b>
事前教示に関する照会書 (減免税照会用)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 (세금 감면 조회 용)		税関様式C 第1000号-22	
平成 年 月 日 년 월 일	照会者の 住所、氏名・印 代理人の 住所、氏名・印	조회 주소, 성명・표시 대리인의 주소, 성명・표시	輸入者符号 수입자 부호 (担当者) (담당자) (電話番号) (전화 번호)
照会内容 조회 내용	하거화물 下記貨物の 第 条 第 項 第 号 関税 税率法 関税 暫定措置法 其他 ( 기타 ) の適用について照会します。		
品名 품명	数量 수량	金額 금액	輸入予定 수입예정 관서 輸入契約の 時期 輸入の予定 時期 수입계약시기 수입예정시기
参考資料 (返却 <input type="checkbox"/> 要 <input type="checkbox"/> 否)	基本・사진・도화・카탈로그・설명서・기타 見本・写真・図画・カタログ・説明書・其他( )	照会貨物に係る事前教示実績 (有・無) (事前教示番号) ( ) 類似貨物に係る輸入実績 (有・無) (輸入申告番号) ( )	
照会貨物の説明 (貨物の性状、機能、用途その他減免税の適用の可否の決定に必要な事実等) 조회화물 설명 (화물의 성질, 기능, 용도 기타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등)			
비공개 기간의 필요 여부 関税は 공개합니다。 非公開期間の要否 (原則公開です。裏面注意事項3参照)			
非公開期間 비공개 기간	(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기간 ) 日 ( 180日を超えない期間)	非公開理由	비공개 이유 補正 説明서 補足説明書 要求 ・ 提出、 枚

(注)裏面の確認書にも記入をお願いします。また、注意事項をよくお読みください。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1000-22](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1000-22),  
(검색일자: 2017. 2. 12)

관세연구 16-01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저 자 강성훈 · 김다량 · 노영예 · 양지영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ISBN 978-89-8191-869-9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